

第11代國會(1981~1985)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豫算案 綜合審查分析**

강 신 택*

目次	
I. 序論	III.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豫算案 綜合審查
II. 第11代國會 豫算審議의 節次 上의 特징	IV. 結論

〈요약〉

常任委員會의 豫算案豫備審查制度의 有·無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예산안심사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 왔는가를 탐색하여 보았다. 第11代 國會의 前半 2年間에는 豫備審查制度가 폐지되었는데 豫決委에서는 歲入과 歲出間의 조정문제가 爭點化되었고 종전에 상임위원회가 수행해 주던 主唱者的役割을 아무도 代行해 주지 않았다.

豫備審查制度가 부활된 제11대 國회의 後半 2年間에는 歲入·歲出間의 조정문제가 爭點化되지 않았는데 豫決委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고 결과에 있어서만 財政의 守護者的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常任委員會의 豫備審查制度를 둘바에는 그 제도를 예산심의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다.

I. 序論

1. 問題의 提起와 研究目的

이 글은 豫算節次上의 변화가 예산심의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알아 보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國會에서 오랜 기간 사용하던 예산심의절차중의 일부 변화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豫算案 審查戰略이나 行態에 미친 영향을 탐색해 보려는 것이다.

制憲國會이래로 그동안 몇 차례의 변화가 있기는 했으나, 우리나라 國회의 예산심의는 常任委員會의 豫備審查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綜合審查를 거쳐서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이 研究는 1992년도 서울대학교 대학발전기금의 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이다.

本會議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을 기본적인 절차로 채택해 왔다.

그런데 제11대 국회(1981~1985)의 4년임기중, 전반 2년동안에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제도가 폐지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만을 거쳐서 豫算案이 本會議에 회부되었고 후반 2년동안에는 종전과 같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제도가 부활된 가운데 豫決委가 예산안을 종합심사하였다.

따라서 常任委員會의 예비심사제도의 有·無가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들의 豫算審查戰略이나 行態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豫想할 수 있다. 만일 아무런 변화나 차이가 없다면 豫算案의 豫備審查와 綜合審查間에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이 될 것이다.

2. 分析의 視角

豫算案 豫備審查制度의 폐지와 부활이라는 절차상의 변화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豫算審議戰略이나 行態上의 변화는 두 가지를 想定할 수 있다. 하나는 歲入規模決定과 歲出水準決定의 조정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豫算案 심사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소관부처의 豫算內容에 대하여 나타낼 수 있는 同調的·支援的 또는 主唱者的인 태도의 문제와 豫決委의 財政의 守護者的인 태도의 문제이다.

첫째로 豫算決定은 財政規模에 대한 결정인 동시에 行政府의 부처별·사업별 수준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 양자가 통합·조정되어야 한다. 행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의 歲入과 歲出은 경제기획원과 국무회의 그리고 행정수반으로서의 大統領에 의하여 통합·조정된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예산심의조직과 회의절차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행정부에서와 같은 통합적인 결정기구에 의하여 歲入과 歲出이 조정되기 어렵게 되어 있다. 常任委員會의 豫備審查制度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 자체로서의 財政規模의 결정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歲入規模의 대부분이 관하여 하나의 常任委員會인 財務委員會가 중요한 결정을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비판을 받아 왔지만, 적어도 결정순서의 논리에서 볼 때에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가 종합심사를 하면서 재무위원회에서 결정한 歲入規模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업별 歲出水準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예비심사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常任委員會에 의한 部處別·事業別 歲出水準에 관한 예비적 결정이 없는 가운데 豫算決算委員會가 財務委員會의 심의를 거친 歲入規模과 정부가 제출한 분야별 歲出水準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豫算案豫備審查制度의 폐지와 부활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행태는 부처별 사업에 대하여 나타내는常任委員들의同調者的인 역할의 문제와 아울러豫決委의 守護者的 역할의 문제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行政部處의 要求一經濟企劃院의 查定一黨政協議一國會常任委員會豫備審查一國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綜合審查로 이어지는 예산결정에 있어서 하나의 독특한 유형이 형성되어 왔다. 즉 행정부처-여당-상임위원회는 정부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등을 주장하는 主唱者(advocates)의 역할을 맡아 왔고, 경제기획원-야당-예산결산위원회가 國庫의 守護者(guardians of the treasury)로서의 역할을 맡아 왔다. 다시 말해서 각 행정부처는 각자 의욕적인事業計劃을 수립하여 팽창된豫算을 경제기획원에 요구한다. 그런데 中央豫算機關으로서의 경제기획원은 한정된 재원을 여러 가지 사업에 배분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主要事業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각부처의 요구액을 삭감하게 된다. 이와같이 삭감된 것 중의 일부가 與黨과의 黨政協議過程에서 부활되기도 하고 증액되기도 한다. 이렇게 요구·삭감·조정된 예산의 일부가常任委員會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과 증액등으로 수정되는데 그것이 다시豫決委의 종합심사과정에서歲入規模를 감안한財政의 총규모를 기준으로 다시 수정되고 조정되는 것이다.¹⁾

常任委員會에서 소관부처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로서 그 구체적인 모습에는 다소 변동이 있어 왔지만 制憲國會때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이다. 이와 같은 제도를 두는 이유는 각常任委員會가 그 소관에 속하는 部處의 事業에 관한 실질적인 입법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업에 관련된豫算案을 심사하게 되면 평소에 파악한 政策과 業務內容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자료를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써豫決算委員會의 종합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²⁾

그러나 실제의 운영에 있어서는 각常任委員會의 예비심사에 있어서 常委所屬委員과 所管部處間에 일종의「同質化現象」이 나타나서 예산의 증액수정이 빈번하였다. 그 원인에도 여러가지가 있겠으나常任委員들은 정부세입의 총규모를 모르고 또 그것을 걱정할 입장도 아닌데다가豫決委에서 삭감이 될망정 증액에 힘쓰기라도 해두면支援勢力의 호감을 살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³⁾

1) 拙著, 「財務行政論」(서울: 博英社, 1993), pp. 270-271.

2) 상계서, p. 250.

3) 상동

常任委員會의 이러한 소관부처와의 同質化 現象의 폐단을 이유로 내세워서 1981년 정기국회부터 1982년의 정기국회까지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제도가 폐지되었다가 1982년의 國會法 改正으로 1984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1983년도 정기국회부터 그 제도가 부활되었다.

제11대 국회는 1980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政治的 激動期를 거쳐서 구성된 것인데 그 國會法은 國家保衛立法會議라고 하는 非常立法機關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그러므로 국회의 능률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常任委員會의 예산안 豫備審查制度를 폐지시켰던 것이다.

○-태에서는 위에서 제기한 두가지 문제, 즉 ① 財務委의 歲入決定과 豫決委의 歲出決定間의 조정문제와 ② 常任委員會의 主唱者的 役割과 豫決委의 守護者의 役割의 문제를 중심으로 제11대 국회의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豫算案審查方式을 분석하고자 한다.

○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는 1981년부터 1984년까지의 정기국회기간중의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이다.

II. 第11代國會豫算審議의 節次上의 特징

1. 歲入・歲出의 조정

豫算是 一會計年度에 있어서의 歲入과 歲出의 豫定的 計算이며豫算決定은 歲入과 歲出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政府의 總財政規模을 결정하는 것인 동시에 분야별 또는 기능별로 事業水準을 결정하는 것이다.

歲入決定은 財政規模의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歲出決定은 政府事業水準의 조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어느 나라에 있어서든지 行政府提出豫算制度下에서는 行政首班이 歲入과 歲出 또는 財政規模과 事業水準을 총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나 國會는 이와 같은 총체적 조정을 담당하는 階層制的 조직이 없고 委員會와 本會議等에서 그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주의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歲入과 歲出의 결정 또는 財政規模과 事業水準의 결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制度變更이 있었으나 언제나 어려움을 겪어 왔다.

豫算是 名目上 歲入과 歲出로 구성되어 있지만 歲入規模의 결정은 關係法令의 개정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國會 本會議의 議決에 앞서서 歲入과 歲出

의 기정을 조정하는 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각常任委員會가 소관 부처별豫算을豫備審查한 후에 일종의「豫算委員會」가 조정과 통합을 위하여 종합심사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와 유사한 절차를 사용한 예가 있는데 그것은豫算案을 각常任委員會가豫備審查한 후에財務委員會로 하여금 종합심사하도록 한 경우이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각상임위원회가 주로 각部處의歲出 즉事業水準을 잡정적으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財務委員會가歲入水準 즉財政規模를 결정하면서歲出을 조정하기 때문에名目上 큰 문제가 없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도를 오래 사용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財務委員會가 자체의 소관 예산안도 심의해야 되고 또 정부전체의 예산안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좋게 말해서業務가過重하다는 것이고 나쁘게 말해서1個常任委員會의權力이상대적으로너무막강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각常任委員會가豫備審查한歲入·歲出豫算案을별도의委員會인豫算決算委員會가종합심사하는방법이다. 이制度(절차)에서는명목상각상임위원회가그소관에속하는歲入과歲出을조정하여결정한것을豫決委가종합적으로조정하는것이기때문에총체적인조정이가능한것처럼보이고합리적이斗고생각될수도있다.

이제도는우리나라에서오래동안사용해온제도이고현재도기본적으로는이러한절차를따르고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이러한제도가가지고있는難點은歲入과歲出을조정하기 어렵다는것이다. 왜냐하면 각常任委員會가명목상으로는그소관부처의歲入과歲出을결정하는것이지만財務部를제외한대부분의行政部處는세입의구모가적기때문에豫算의예비심사는사실상주로세출을심사하는것이된다. 그와는반대로財務委員會가하나의상임위원회이고財務部의예산안을예비심사하는것에불과하지만재무부자체의세출은적고그세입은정부세입의대부분을차지하므로財務委는결국세출보다는정부전체로서의歲入을심사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더구나이과정과관련하여財務委는歲入規模에영향을미치는稅法을改正하기도하는것이다.

마지막豫算案을종합심사하는豫算決算委員會는각상임위원회에서이루어진주로歲出에관한예비심사의결과와財務委員會에서이루어진歲入에관한결정과行政府로부터의提案內容을종합적으로검토해야되는것이다. 이때중요한기준이되는것은政府原案과財務委의歲入을중심으로한예비심사의

결과 같다. 財務委의 결정과豫決委의 결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合同會議制度를 두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었던 것 같다. 따라서豫決委員들로서는 政府案과 財務委의決定을 조정해 주는 일이 主業務가 되어버리는데, 이것은 결국 常任委의 결정을 대부분 무시해 버리는 꼴이 된다. 그 이유는 常任委員會가 각 부처의豫算을 증액시켜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서 아마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했던 것 같다. 즉 歲入과 歲出의 결정을 조정하는 셋째 방법은 常任委員會의 예비심사제도를 폐지하고 財務委가 歲入을 결정한 다음에豫決委가 歲入과 歲出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第11代 國會의 前半 2年間에 채택했던 절차이다.

위의 세가지 方法들이 모두 委員會間의 權力關係뿐만 아니라 決定의 順序 또는 時間差와도 관계가 있다. 즉 누가 먼저決定하며 어느 委員會의 결정이 더 큰 구속력을 갖느냐 하는 문제이다. 결정의 순서를 단순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라는 단계로만 본다면豫算決算委員會의 결정이 더 큰 구속력을 갖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가 되었건 간에 歲入과 歲出을 조정하는 방식은 時間差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① 歲入과 歲出을 別個의 委員會에서 각각 결정하되 同時に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三兩者가一致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② 歲入과 歲出을 각각 결정하도록 한 뒤에 兩者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양자를 일치시키기는 비교적 용이하나 먼저 결정된 歲入이 후에 결정될 兩者的 조정을 크게 制約한다. 왜냐하면 먼저 이루어진 歲入決定의 내용은 稅法 등의 개정으로 영향을 받게될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③ 歲入・歲出豫算中 歲入部分과 관련된 내용을 財務委員會가 결정하고 있는 동일한 기간에豫決委가 주로 歲出部分에 관한 심의를 해놓은 다음에 歲入의 결정이 끝난 후에 다시 歲入과 歲出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11대 國회 前半期의豫算審議 방식이었다.

2. 主唱者的役割과 守護者的役割

前述한 바와 같이 常任委員會의豫算案豫備審查에서는 常任委員과 所管部處間に 同質化現象이 나타나서豫算要求額을 삭감하기 보다는增額修正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같은行態는 일종의主唱者的役割이라고 할 수 있다. 國會는 國民代表機關이므로 당연히 國民의 財政負擔이 늘어나지 않도록 政府事業의膨창을 억제하는 것이 國會議員에게 기대되는役割인데,

그와는 반대로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財政의 弶창을 수반하는 사업의 확장을 주관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볼 때 非正常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常任委員會別로 볼 때에는 그 소관사업이 다른 분야의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國庫의 守護者(guardian of the treasury)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委員들이 도리히 事業의 主唱者로서의 역할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다.

제11대 국회의 前半期에는 常任委員會의豫算案豫備審查制度가 폐지되었으므로 常任委員會가 主唱者の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는 없어진 셈이다. 그로라면 상임위원회를 대신하여 각 부처의 사업을 옹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替組織이 생겨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즉豫算決算委員會의 分科委員會가 部別審議에 있어서 종전의 상임위원회가 맡고 있던 主唱者の 역할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後述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특징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豫決委의 守護者的役割도 被動的으로 수행되고 있을 뿐이다.

III.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豫算案綜合審查

1. 前期(1981~1982年度) : 常任委員會豫備審查制度의 폐지

(1) 歲入・歲出의 조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1대 국회 前半期에 있어서는, 常任委員會에 의한豫算案豫備審查制度가 폐지된 가운데豫決委가 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밑에서는 歲入・歲出豫算中 歲入規模에 영향을 미치게 될 稅法등에 관한 내용을 財務委員會가 결정하고 있는 동안에豫決委가 일단 주로 歲出部分에 관한 심의를 해 놓은 다음에 歲入에 관한 결정이 끝난 후 다시 計數調整小委員會등을 통하여 歲入과 歲出을 균형시켜 나가게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常任委員會의豫備審查制度를 폐지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節次上의 변화가 종전부터 있어왔던 어려움을 심화시켰고, 이러한 節次上의 결함이 겪어오는 어려움이 野黨委員들의 좋은 攻擊대상이 되었다.

1982年度 예산안을 심의한 제108회 국회豫算決算特別委員會 제9차회의(1981. 11. 7)에서 李奉模委員(國民당)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다.⁴⁾

「……이번 國會에 政府가 稅法改正案을 제출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稅法案이 아직 국회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또한 檢討된 바도 없는데 政府가 일방적으로 改正稅法을 중심으로 명년도 예산을 歲入豫算을 책정해 놓고 명년도 歲出豫算案까-

4) 第108回 國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9號(1981. 11. 7).

기) 國會에 내 가지고 豫算審議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 稅法改正案이 國회의 동의를 얻은 그에 82년도 豫算審查를 해야 한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副總理께서 國會에 대한 그概念을 물고자 합니다. 어떻게 國회에 稅法改正의 同意없이任意로 稅法을 개정한 改正稅法을 토대로 한 歲入豫算을 책정해 가지고 이 國會에서 그것을 根據로 한 歲出을 하겠다는 豫算을 提出할 수 있는 그 根據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副總理한테 묻는 일입니다.」

위와 같은 質疑에 대해서 申秉鉉副總理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⁵⁾

「……政府는 稅法改正과 동시에 豫算案을 國會에 제출했습니다마는 특히 稅法은 豫算과直結되는 法案으로서 豫算案과 동시에 國회에 제출한 후 심의를 받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償例도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稅法과 豫算案을 동시에 제외하고 심의받는데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攻防은 그후로도 계속되었다. 金完泰委員(國民黨)은 이미 제기되었던 質問의 내용을 약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節次上의 虛點을 이용한 對政府攻擊戰略의 一環인듯 하다.⁶⁾

「원래 豫算이란 歲入과 歲出로 구성되어 있는데 歲入部分인 각종 稅法과 그 附隨法律(正案)이 방금 해당 常任委員會에서 審議確定도 되지 않았는데, 豫決委에서 확정도 되지 않은 假定數值인 歲入을 바탕으로 해서 歲出豫算을 심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서 委員長이 議事日程을 변경해서 國會法規定에 따라 각종 稅法改正案과 豫算關係附隨法 改正案을 豫算決算委員會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正式으로 動議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本法會議에서 개정한 國會法은 각 상임위원회의 豫算審議權을 이처럼 박탈하면서 歲出豫算審議權만 사실상 없앤 것으로서 歲入豫算是 사실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歲出豫算是 豫算決算委員會에서 각각 심의하는 現 豫算審議制度上의 모순과 근본적으로 常任委員會의 예상심의권 박탈문제에 대해서 副總理께서는 行政府의 代表로서 立法府를 보는 視角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法務部長官께서는 法律的인 차원에서 과연 違法이 아닌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質疑가 반복되자 申秉鉉 副總理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세번쯤 答辯을 벌써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 달라고 답변하고 있다.⁷⁾

5) 上同 會議錄, p. 28.

6) 第108回 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會議錄 第12號(1981. 11. 11), p. 14.

7) 上同 會議錄, p. 29.

◦ 렇듯豫算案에 대한 각 常任委員委의豫備審查節次의 폐지는 歲入과 歲出間의 조정이라는 문제를 놓고豫決委에서爭點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爭點은 다음해의定期國會에서도 반복되었는데野黨委員들이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하나 더 생겼던 것이다. 즉金融實名去來制와 관련된 논란이다.野黨委員들은 歲入規模推定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金融實名去來制度가法律로서 결정되기 전에 歲出에 관한 부분만을 먼저 심의해 달라는政府立場의不當性을 지적하고 있다.

◦에 대하여金堦成副總理는政府가財務委員會에7개稅法改正法律案과金融實名去來에관한法律案을제안하였다고말하면서다음과같이답변하였다.⁸⁾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豫決委員會에 제출해 놓은 1983년도本豫算案은 기술적으로 이런 제출되어 있는 稅法改正이라든지 實名去來制에 관한法律案이 결정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세출에 여러가지 조정작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일단 제출된 여러가지法案에 대해서는 國會審議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고, 또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歲入과 歲出은 늘 시기적으로 잘 맞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관례적으로 歲出案을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歲入規模가法律案의여러가지改正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그때에 가서 조정이 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의答辯은 그동안의 관례에 관한 해명인데, 과거의 관례가爭點으로 부각된 것은常任委員會의 예산안 예비심사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稅法들이 개정된 후 歲入과 歲出을 조정한다는 뜻은 예산심의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計數調整을 통한 조정을 의미한다. 따라서豫決委의政策質疑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部別審議에 있어서도 어떤 결정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어느豫算項目의 金額을削減 또는增額시킬 것인가에 관한 意見交換의 성격이 짙으므로 사실에 있어서는 歲入規模를 모르더라도 歲出部分의 심의는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野黨委員들은與黨인民正黨에서 實名制에 대하여異見이 있는 것을理由로내세워서政府案과與黨案중 어느것이 실제의「單一案」인가에관하여집요하게 따진 것이다. 즉政府와與黨間에異見이 있는 實名制의 改正方向도 도르는 상태에서豫算案을 심의하는 것은 歲入에 관한 한虛構를 심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野黨이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野黨의攻勢에 대해서與黨인民正黨의李大淳委員은 歲入部門은

8) 第114回 國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會第10號(1982.11.4), p.2.

租稅法定主義이고 稅法改正은 財務委所管이므로 財務委와 豫決委가 「合同會議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⁹⁾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歲入歲出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歲入에 관련된 부문도 우리가 고려하지마는 주로 제도상(으로) 볼때 歲出豫算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그와 관련된 稅法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세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해당 財務委員하고 협의하는 것이 우리의 憲法과 國會法의 질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二. 후로도 野黨에서는 國務總理, 副總理 그리고 與黨側의 異見을 부각시켜서 歲ノ이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歲出만을 심의하는 것이 不當하다는 주장을 펴풀이 하였다.

(.) 主唱者的 役割

常任委員會가豫算案豫備審查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는 각 소관부처의 事業과豫算에 대하여 同情의・支援的인 입장에서 일종의 主唱者的인 역할을 수행하여 소관 부처의 예산을 살피하기 보다는 증액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비판을 날아 왔다.

그런데豫備審查制度가 폐지된 제11대 국회의 前半期에는 누가 主唱者的인 역할을 代行해 주었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關心事が 될 수 있다. 그러나 會錄에 나타난 결과만 놓고 본다면 아무도 主唱者的인 역할을 代行해 주고 있지 않다.

우·1 部別審議에 들어가기 전의 政策質疑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分科委員會別 심사에 있어서도 별다른 특징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政策質疑에 있어서는 委員들의 질문이 어느 특정분야에 집중되거나 한정되기보다는 國政全般과 여러 부처에 걸쳐 있고 한 사람의 委員의 질문에 대해서 國務委員들이 해당업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그래서 質疑-答辯은 예산안심사라기 보다는 意見交換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例는 李英駿委員(民韓黨)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¹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요 質問은 56가지를 제가 준비하면서 예상 보충질문은 150여가지를 준비한 바 있습니다. 충실한 답변으로서 저의 준비된 補充質問이 나가지 않게끔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특정분야를 지원하는 發言에서도 매우 異色的인 논리가 구사되기도 하였

9) 合同會議錄, pp. 5-6.

10) 第114回 國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 會議錄 第10號(1982. 11. 4), p. 47.

다. 崔某委員(民正黨)은 여러가지 수사를 사용하여 民族·國家·文化등을 강조한 후에 다음과 같은 論理로 秋穀收買價格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¹¹⁾

「經濟는 數字上에 확실성이 있습니다라는 歷史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歷史나름대로의 진실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았을 때 경제적인 수자에서 14%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넓을 수 없는 최상의 限界點이라면 그것은 경제적 합리성에서 14%를 확보하고 歷史的인 合理性에서 다시 14%를 확보해서 28%정도의 바로 秋穀收買價格에 대한 補償을 하는 것이 이것이 경제적인 합리성으로는 실패가 될지 몰라도 歷史의合理性으로는 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豫決委員은 交涉團體別·常任委員會別로 안배하여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豫決委員들간에 원래의 소속 委員會別로 分業이나 專門化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인데 會議錄에서는 그런 특징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書面質疑件數를 보면 제108회 국회 豫決委 제8차 회의에서만도 10명의 委員들이 60여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10여개 부처에 중복적으로 걸쳐 있고¹²⁾ 제114회 국회 豫決委 제10차 회의에서는 10여명의 위원들이 무려 400여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였는데 30여개 부처·기관에 걸쳐 있다.¹³⁾

豫決委에서 常任委員會의 종전의 예비심사기능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곳은 分科委員會이다. 즉 分科委員會가 각기 分擔部處의 사업과 예산에 관하여 主唱者인 역할을 수행해 줄 수도 있으리라는 것이다.

제108회 국회 豫決委에서는 分科委員會 구성에 있어서 「그 기준은 가급적 관련 部署別로 하였고 委員數등은 끌고루 안배하되 交涉團體의 비율을 감안」하고 있다.¹⁴⁾ 1981년과 1982년의 豫決委 分科委員會의 構成內容은 <표 1>과 같다.

分科委員會은 <表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회의 13개 常任委員會의 所管部處別로 5개의 分科委員會로 구성되어 있고 앞에서 引用한 바와 같이 交涉團體比率로 안배하고 있다. 그리고 가능한 한 常任委員들을 관련이 있는 分科委員會에 배치하고는 있으나 관련이 없는 곳에 배치된 委員들도 있다. 이와 같은 구조으로 볼 때 分科委員들이 자기가 원래 소속하고 있는 常任委員會 所管部處의 事業이나 豫算을 응호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되는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 상의 考察을 토대로 판단컨대 11代國會 前半期에는 각 부처의 사업에 관한 主唱者的 役割을 代行해 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을

11) 제108회 국회豫算決算特別委員會 會議錄 第11號(1981. 11. 10), pp. 50-51.

12) 제108회 국회豫算決算特別委員會 會議錄 제 8 호(1981. 11. 6), pp. 42-45.

13) 제114회 국회豫算決算特別委員會 會議錄 제 10 호(1982. 11. 4), pp. 47-55.

14) 제108회 국회豫算決算特別委員會 會議錄 제 8 호(1981. 11. 6), p. 15 참조.

것이 날.

1981년의 경우 각 분과위원회에서 所管部署에 대한 1982年度豫算案의 심의를 마친후豫決委는 예년과 같이 11名으로 된豫算案調整小委員會를 구성하여 「計劃를 조정」하고 있다. 그 결과를 「在席 49人 중 찬성 26인 반대 22인으로 1982년도豫算案은豫算調整小委員會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原案대로可決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¹⁵⁾

〈丑 1〉 諮決委 分科委員會 構成內容

분		1981년도 상임위원회 소속													
분과 위원회	위원수	교단체별	운영	외무	국방	법사	내무	문화	재무	경제	상공	농수산	보사	교체	건설
			연	무	방	사	부	공	무	과	공	산	사	체	설
제 1 (국회운영· 외무·국방)	9	민정 5 민한 3 국민 1 무소속 0	(1)	1	2						1	1			
제 2 (법제사법· 내무·교 공보)	11	민정 6 민한 3 국민 1 무소속 1	(1)			1	2	2	1						
제 3 (재무·경제 과학·공공)	11	민정 6 민한 3 국민 1 무소속 1					1		2	1	2				
제 4 (농수산·보 건사회)	9	민정 5 민한 3 국민 1 무소속 0									1	3	2		
제 5 (교통체육· 건설)	9	민정 5 민한 3 국민 1 무소속 1	(2)						1		1		2	1	3
총 계	50	민정 27 민한 15 국민 5 무소속 3	(4)	1	2	1	3	2	3	1	2	4	3	2	3
		계	(6)	2	3	2	5	3	6	4	6	5	6	4	4

15) 제 08회 국회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제17호(1981. 11. 30), p. 11.

부 분 위 원 회	위 원 수	교 단 체 별	상임위원회 소속											
			운 영	외 무	국 방	법 사	내 무	문 공	재 무	경 과	상 공	농 산	보 사	교 체
제 1 (국회 운영· 외무·국방)	8	민 정 4 민 한 3 국 민 1 무소속 0	(1)	2	1		1					1		
제 2 (경제사법· 내무·문교 공보)	11	민 정 6 민 한 3 국 민 1 무소속 1	(1)			1	2	2			1			1
제 3 (내무·경제 과학·상공)	11	민 정 6 민 한 3 국 민 1 무소속 1		1			1		1	1	2			
제 4 (수산·보 조사회)	11	민 정 6 민 한 3 국 민 1 무소속 1	(1)	1						1		3	2	
제 5 (통체신· 건설)	9	민 정 5 민 한 3 국 민 1 무소속 0							1	1			2	1
총 계	50	민 정 27 민 한 15 국 민 5 무소속 3	(3)	4	1	1	4	2	2	2	3	4	2	1
							1	1	1	1	1	1	1	1
			계	(3)	5	2	2	7	5	5	3	5	5	2

자료 : 국회 사무처, 제11대 국회 경과보고서(1985), p.47, pp.73-74.

()내 숫자는 겸임 위원수임.

2. 後期(1983~1984年度) : 常任委員會豫備審查制度의 復活

(1) 歲入·歲出의 조정

제11대 국회 後半期에는 종전과 같이 각 常任委員會에 의한 豫算案豫備審查를 거쳐서 豫決委가 종합심사하는 절차로 되돌아 갔다. 만일 豫算審議過程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규정된 절차상의 순서대로 時間上의 순서가 진행된다면 적어도 형식상으로의 歲入과 歲出間의 조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常任委員會에 의한 각 부처의 歲入과 歲出에 관한 모
든修正案이豫決委에 회부되었을 것이므로豫決委는豫算의原案과 歲入·歲
出에 관한修正案을 가지고 歲入과 歲出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豫算審議의 實際에 있어서는常任委員會의 예비심사가 모두 완결되기
전에豫決委가豫算案審查에着手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되어 있다. 이 때
에는歲入規模에 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歲出部分에 관해서도 불확실성 속에
예산심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11代 국회 전반기
豫決委에서 제기되었던爭點인「歲入決定前의 歲出심사의 도순」에 관하여
다시論爭을 반복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는 이러한爭點이 제기되지 않았다. 즉歲入規模가 알려진 것도 아니고 확정된
것도 아닌데豫決委는歲出部分만을 심사하였고 그것이爭點化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金宗鎬豫決委員長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잘 나타나고 있
디.¹⁶⁾ 각分科委員會에서 소관부서의 1984年度豫算案에 대한 심사를 하여報告
를 마친 다음,豫算案調整小委員會를 구성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來年度豫算案中財務部所管歲入部門에 대해서는財務委員會에서 현재稅法과 명행심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財務委員會의豫備審查報告書가 회부되는대로豫算案調整小委員會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守護的役割

우리나라의豫算決定에 있어서豫算規模의總額만을 놓고 본다면各部處에
의한增額要求—豫算室에 의한削減—黨政協議過程에서의增額—常任委豫備審
查時의增額—豫決委綜合審查時의削減이라는類型을 만들어 왔다. 이 때各
部處,與黨 및常任委는 사업의 중요성을 주장하는主唱者的인役割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豫算室과豫決委는財政의制約속에서歲出을 조정하는
守護者(guardian)의인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대 국회의後半期에常任委員會의豫備審查制度가「부활」되었으므로各
常任委가 종전처럼 그 소관부처의豫算案에 대하여支援이나主唱을 했다면歲
出額增額에 합의하였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豫決委가 다시守護者的役割을 하
면서政府原案에 가까운 결정을 하였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役割差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제119회
국회豫決委의豫算案調整小委員會 심사결과를報告받고 그에 대한 찬·반토론

16 제119회 국회豫決委회의록 제10호(1983. 11. 25), p. 5.

을 하는 중에 金翰宣委員(國民黨)은 反對討論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개탄하고 있斗.¹⁷⁾

「자:委員은 이번 定期國會의 예산심의가 매우 뜻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11대 우리 국회가 구성된 이래 그렇게도 끈질기게 우리 野黨議員이 주장해 온 國會法이 개정되어 常任委員會에 豫算審議權이 復活됨으로써 그 어느 때 보다도 民主的이고 對話와 說得을 통해 심도있게 우리 國民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예산심의가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각 常任委委사에서도 與野合意件이 하나도 없이 그저 少數意見이라는 이름으로豫決委에 회부되고豫決委도 合意없이 進行」

하였다는 不滿이다.

이 자 한 사정은豫決委小委員會가 구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각 分科委員會의 심사₁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1983년도 국회豫決委의 第2分科委員長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¹⁸⁾

「.....상임위원회에서豫備審查報告書를 받아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한 결과 當分科委員會所管 84년도 예산안을 政府原案대로 합의하고 일부部署에 산에 대해서는 少數意見을 달도록 하였습니다.」

이 자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政府原案으로 되돌아 오고 마는 것이다. 단일 政府原案中 歲入部門에 대한 削減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라서 歲出部門도 식감해야 되는데 1983년과 1984년의豫決委는 歲入을 정부원안대로 결정하였으므로 歲出部門에 대해서는 그 規模를 그대로 둔채 總額內에서 일부 항목은

〈표 2〉 歲出豫算案 調整內譯(1984年制豫算案) (금액 : 백만원)

削減項目		增額項目	
豫算項目	金額	豫算項目	金額
1. 낙입양곡대 상환	25,000	1. 전국체전지원	2,000
2. 도항공업기지 건설	4,100	2. 지방체육시설	4,000
3. 국관치수	3,900	3. 국회도서관건립	1,629
4. 해보상부담금	500	4.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1,000
5. 주립공원개발	550	5. 양곡관리기금	30,421
6. 비비	5,000		
합계	39,050	합계	39,050

자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의개요」 제 1집 (제10대 국회~제13대 국회), 1990, pp. 63-68에서 작성.

17) 會議錄 제 11호(1983. 12. 2.), pp. 6-7.

18) 제 119회 국회豫決委會議錄 제 10호(1983. 11. 25.), p. 2.

〈표 3〉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반영한 항목(1984년 예산안)
(단위: 백만원)

削減項目			增額項目		
豫算項目	金額		豫算項目	金額	
	예결위	상임위		예결위	상임위
1. 재해보상부담금	500	500	1. 전국체전지원	2,000	—
2. 예비비	5,000	6,000	2. 국회도서관전립	1,629	1,630
			3. 국립현대미술관전립	1,000	—
합계	5,500	6,500	합계	4,629	1,630

주 1: 전국체전지원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기타의견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합의되지 않은 채 84년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대구시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체육시설비를 계상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주 2: 국립현대미술관 전립 예산 역시 구체적인 금액은 합의되지 않고 기타의견으로 현대미술관 전립비 예산을 계상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개요」 제 1 집(제 10대 국회 ~ 제 13대 국회), 1990, pp. 63-68 및 제 108회 국회 豫決委 會議錄

삭감하고 또 일부 항목을 증액함으로써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고 있다.

① 1984년도 예산안

1983년도 정기국회 豫決委에서 의결된 세출예산안 조정내용은 〈表 2〉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削減과 增額으로 조정된項目數도 많지 않고 金額도 크지 않다.

豫決委 豫算案調整小委員會에서 조정된 항목중(〈표 2〉)에서 常任委員會의 예비심사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항목은 〈表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豫決小委에서 増・減이 결정된 예산항목중 常任委員會의 예비심사결과를 반영한 削減項目은 재해보상부담금(총무처)과 예비비(경제기획원) 등 2개 항목이며 增額項目은 국회도서관 전립(국회), 전국체전지원(체육부), 국립현대미술관 전립(문화부) 등 3개 항목이다. 그리고 이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중 合意事項을 반영한 항목은 하나도 없으며 5개 항목 모두가 소수의견이나 기타의견으로 보고된 것이다. 그 외에는 豫決委의 調整이 常任委의 報告內容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常委에서 증액을 신의했더라도 豫決委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자체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다. 즉 政府原案에 가까운 결정을 함으로써 守護者的인 役割을 수행한 셉이다.

② 1985년도 예산안

1984년도 정기국회 豫決委에서 의결된 세출예산안 조정내용은 〈表 4〉와 같

〈표 4〉 歲出豫算案 調整內譯(1985年制 豫算案) (금액 : 백 만원)

削減項目		増額項目	
豫算項目	金額	豫算項目	金額
1. 수출입은행출자	10,000	1. 일반도로건설	10,032
2. 교육차관사업	6,819	2. 임대주택건설	2,000
3. 국채이자	2,255	3. 택지개발간선시설	1,897
4. 예비비	5,960	4. 재해상습지개선	1,986
5. 동명재산매입	1,400	5. 일반하천개수	1,800
6. 경찰장비	1,997	6. 농업용수개발	2,857
7. 학·예술회관건립	712	7. 마을금고안정기금	2,000
8. 공무원재해보상금	800	8. 지방체육시설	3,650
9. 학생군사훈련비	503	9. 서울대체육관등	4,368
10. 교육대학생학자금	112		
11. 서울시국가공무원인건비	32		
합계	30,590	합계	30,590

자료: 주 18) 참조.

〈표 5〉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반영한 항목(1985년 예산안)
(단위: 백만원)

削減項目			増額項目		
豫算項目	金額		豫算項目	金額	
	예결위	상임위		예결위	상임위
1. 서울시 국가 공무원인건비	32	32	—	—	—
2. 교육차관사업비	6,819	325	—	—	—
3. 일반예비비	5,960	9,000			
합계	12,811	9,357	합계	—	—

자료: 주 18) 참조.

다. ⑨ 그리고 이중에서 常任委員會의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항목은 〈表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1984년도 豫決委 종합심사의 결과를 볼 때 削減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중 3개 항목을 반영하고 있으나 증액의 경우에는 하나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삭감된 항목의 경우 서울시 국가공무원 인건비와 교육차관시설비는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삭감이 결정된 것들이다.

11) 제123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5호(1984. 12. 1.), pp. 1-2 및 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의개요」 제 1집(제10대~제13대 국회), 1990, pp. 68-71 참조.

이와 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 所管部處의豫算을 증액시키려는 각 常任委員會의 同計的-支援的主唱者的인 노력은豫決委의 결정에서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豫決委는 政府原案에 가까운 歲入規模의 태두리속에서 常任委의 심사결과를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자체의 增減調整을 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守護者的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IV. 結論

제 1대 국회의 前半期(1981~1982)에는 常任委員會의豫算案豫備審查制度가 폐지되었고 後半期(1983~1984)에는 예비심사제도가 부활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豫備審查制度의 有・無가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豫算案審查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 왔는가를 탐색해 보았다. 첫째는 歲入・歲出의 조정문제이고 둘째는 政府事業에 대한 主唱者的役割과 財政의 守護者役割의 문제이다.

前半期에는豫備審查가 없었기 때문에財務委員會에서 稅法改正등으로 歲入規模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일한 기간에豫決委의 예산수의가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豫決委에서는 歲入規模을 모르면서 어떻게 歲出部分만을 실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野黨委員들에 의하여爭點화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後半期에는 이러한爭點이 제기되지 않았다.

主唱者와 守護者の 문제에 있어서前半期에는常任委員會가 주창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가 없었으므로豫決委의 分科委員會에서 그러한役割이代行될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아무도 그役割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 後半期에는主唱者的인役割遂行이期待되는常任委員會의 예비심사제도가 부활되었으므로豫決委는財政의 守護者的인役割을 수행해야 하는데, 비록豫決委는 그역할이 뚜렷하지도 않고常任委의 결정과 거의無關하게 결정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政府原案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는 결정을 허으로써 그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위의分析結果를 놓고 볼 때豫算審議에 있어서常任委員會의豫備審查制度가 비록行政部處와常任委員會間의 상호작용속에서相互學習과批判기능이 수행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豫算額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豫備審查制度가 폐지되었다가 부활된 이유는 더 많은國會議員들이 예산심의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

이로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豫備審查制度를 둘바에는 常任委와 豫決委間의 役割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립하고 절차에 있어서도 좀 더 체계와 규율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常任委員會의豫備審查의 結果가豫決委에 있어서의 綜合審查의 기초가 되도록 해야지 현지처럼 거의無關하다면豫備審查와 綜合審查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歲入과 歲出의 조정문제도豫決委와 財務委의 協議過程을 좀 더 체계화하여 歲入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